##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8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진성준ㆍ허 영ㆍ박해철

김주영 · 강선우 · 양문석

위성곤 • 정을호 • 정태호

임광현 • 문진석 • 김태년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·허가,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원위원회가 자연공원의 지정·해제 및 구역변경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음에도, 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1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공원위 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1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
	의제) 제9조제2항에 따른 각
	공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
	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
	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
	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